

수원지방법원 2024. 11. 7 선고 2024가단7297 판결 [건물명도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0. 17.

판 결 선 고 2024. 11. 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나. 21,769,798원 및 그 중 21,027,840원에 대하여 2024. 9. 2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다. 2024. 6. 5.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,8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연운희

별지